

인천광역시 노인복지증진 사업 지원에 관한
조례안

인천광역시의회

인천광역시 노인복지증진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1036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10. 3. 24

발 의 자 : 김용근·정중섭 의원
(찬성자 4인)

□ 제안이유

- 가. 최근 급격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들의 소외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노인들에 대한 삶의 질 문제와 보건복지증진에 대한 관심과 대책이 시급한 실정임.
- 나. 따라서 노인들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면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노인복지 시책을 마련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.(안 제1조, 안 제2조)
- 나. 지원대상에 대하여 규정함.(안 제3조)
- 다.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의 종류를 규정함.(안 제4조)
- 라. 예산의 지원 및 위탁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.
(안 제5조, 안 제6조)
- 마. 지원대상자 선정에 대하여 규정함.(안 제7조)

□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.

인천광역시 노인복지증진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노인복지법」 제4조에 따라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같은 법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유희지 등”이라 함은 국·공유지 또는 개인의 소유로서 임대계약 등에 의하여 일정기간 농경지로 사용할 수 있는 토지를 말한다.
2. “경작지 지원사업”은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일정규모의 경작지를 일정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.
3. “독거노인공동생활가정”이라 함은 독거노인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별도의 계획에 의하여 정한 시설을 말한다.

제3조(지원대상)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

1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상의 수급자
2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상의 차상위계층자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제4조(사업의 종류)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유희지 등을 이용한 경작지 지원사업
2. 독거노인공동생활가정 지원사업
3.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

제5조(예산의 지원) 시장은 제4조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(위탁관리)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위탁관리 기간은 2년으로 한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제7조(지원대상자 선정) 제3조의 대상자는 제4조의 사업의 종류별로 시장이 따로 선정한다.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법령	<input type="checkbox"/> 노인복지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2조(기본이념) - 제4조(보건복지증진의 책임) - 제28조(상담·입소 등의 조치) - 제32조(노인주거복지시설) - 제47조(비용의 보조) <input type="checkbox"/> 노인복지법 시행령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24조(비용의 보조)
관련법규 정비대상	
관련자료	

관계법령 발췌사항

【노인복지법】

제2조(기본이념)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.

② 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는다.

③ 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보건복지증진의 책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,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28조(상담·입소 등의 조치)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,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노인에 대한 복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1. 65세 이상의 자 또는 그를 보호하고 있는 자를 관계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상담·지도하게 하는 것

2. 65세 이상의 자로서 신체적·정신적·경제적 이유 또는 환경상의 이유로 거택에서 보호받기가 곤란한 자를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위탁하는 것

3. 65세 이상의 자로서 신체 또는 정신상의 현저한 결함으로 인하여 항상 보호를 필요로 하고 경제적 이유로 거택에서 보호받기가 곤란한 자를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위탁하는 것

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이하 "복지실시기관"이라 한다)은 65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도 그 노쇠현상이 현저하여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.

③ 복지실시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소조치 된 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자에 대한 장례를 행할 자가 없을 때에는 그 장례를 행하거나 당해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그 장례를 행하게 할 수 있다.

제32조(노인주거복지시설) ①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.

1. 양로시설 :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
2. 노인공동생활가정 :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,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
3. 노인복지주택 :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·생활지도·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

②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·입소절차·입소비용 및 분양·임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.

③ 노인복지주택의 설치·관리 및 공급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「주택법」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.

제47조(비용의 보조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.

【노인복지법 시행령】

제24조(비용의 보조) ①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설치·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
2. 법 제34조제1항제1호·제2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·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
3. 법 제3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
4. 법 제3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
5. 법 제39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보호전문기관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의 부담비율은 「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1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때에는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평가의 결과 등 당해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보조할 수 있다.